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4. 9. 4.(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창훈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9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6
6.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32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16일
-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편견과 당뇨 환자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등, 성장기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당뇨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5. 검토의견

- 지난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국회 전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소아당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0~19세)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2% 증가¹⁾하였으며 2023.4.1.자 기준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학생의 수 또한 2021년 3,111명에서 2023년 3,85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뇨병은 1형, 2형으로 나누어지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해서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은 말초 기관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의 대다수는 1형 당뇨병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홈페이지

※ 소아 당뇨 환자 1형, 2형 비율

심사년도	2023년 환자수(명)	1형당뇨 비율	2형당뇨 비율
5세미만	179	82.7	17.3
5_9세	935	74.5	25.5
10_14세	3643	40.0	60.0
15_19세	9012	22.5	77.5
20_24세	15131	16.0	84.0

- 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하며, 2형 당뇨병의 경우 운동과 식이조절 같은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혈당강하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철저한 혈당관리를 유도하여 2, 30대에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최근에 안타깝게도 태안에서 제1형 소아 당뇨병을 앓던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숨진채 발견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등, 당뇨 환자의 인슐린 사용 및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당뇨 환자와 가족에 대한 주변의 잘못된 인식, 학교생활에서 저혈당 우려로 체육 활동 배제, 친구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서 인슐린 주사 맞기, 당뇨병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또래집단에서 따돌림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으로는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 외 「보건 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서 당뇨병을 만성질환의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 사회적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관리의 비효율 및 형평성 저해, 질병별 법 제정에 따른 행정력 한계 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당뇨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38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21일
- 발 의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변경 및 기 지정된 금연구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업무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금연구역의 지정·지정 변경·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교육 및 홍보 관련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되어서 기존에 있던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만원 이상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금연구역 내 위반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번 과태료 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기준액 명확화 와(예: 10만원, 5만원 등) 지자체간 과태료 편차 최소화 등의 권고 사

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시도 및 대구시 구군의 조례 지정(예고)을 참조,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책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시 구군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단위 : 원, 기준일 2024. 9월 현재)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군위군
50,000	20,000	20,000 → 50,000	20,000 → 50,000	20,000 → 50,000	10만원 이하 → 50,000	20,000	20,000 → 50,000	30,000
조례 명시	조례 명시	시행규칙 명시	조례 명시	조례 명시	조례 명시	시행규칙 명시	시행규칙 명시	조례 명시
(24.5.20. 개정)		규칙 입법예고 (07.30.)	입법예고 (07.10)	입법예고 (08.21)	입법예고 (08.23)		입법예고 (07.11)	

(주1. 달서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 달성군 금연구역 현황 및 점검 실적

금연구역 현황: 9,572개소 (2024. 8. 29.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8,706개소

구분	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 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학원	게임 제공 업소	음식점	공동주택	기타
8,706	75	106	285	183	506	81	4,053	23	3,394

- 달성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 866개소

구분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택시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기타
866	59	709	61	5	31	1

○ 금연 지도 · 점검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국민건강증진법	조례지정
계	17,612	16,317	1,295
2023년	11,547	10,498	1,049
2024년 1~7월	6,065	5,819	246

○ 과태료 단속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국민건강증진법	조례지정
계	83	4	79
2023년	51	4	47
2024년 1~8월	32	-	32

○ 금연 지도 · 점검 인력현황

구분	계	담당자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일 4시간)	기간제 (6개월)	위촉직 (영중 60일, 1일 4시간)
2023년	7	1	2	1	3
2024년	7	1	2	1	3 (1명: 9월 근무예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37호
- 발 의 일: 2024년 8월 16일
-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임금의 수준이 근로 시간에 비례하는 등 열악하며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실정임.
이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검토의견

- 이동노동자는 그 정의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 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이동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이전 시기 대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임금 수준이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장시간 근로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경쟁적인 시장환경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 달 중 25일 이상 근무 : 음식배달원(57.5%), 퀵서비스 기사(61.2%), 대리운전기사(63.2%))
-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내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많은 이동노동자가 대기·휴식 장소의 부재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노동자가 마음 편히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의 마련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진 노동자의 쉼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뿐만 아니라 이동노동자에 대한 법률 및 세무상담, 노동상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현황

구 분	수도권	수도권 외(대구 포함)
쉼터	19	19
간이쉼터	13	10

※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현황 및 월평균 이용자

- 수성구(범어), 달서구(장기) 2곳(대구시 직영, 연간 3.8억 원)

(단위 : 명)

구 분	운영기간	수성쉼터	달서쉼터
2021년	2개월	252	268
2022년	12개월	5,907	5,351
2023년	12개월	6,378	5,528
2024년	6개월	3,751	3,156
총계	32개월	16,288	14,303
월평균 이용자		509	44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53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위탁대상	위탁기간(최초위탁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994. 11. ~ 현재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옥외광고물 신규·연장 허가 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사무처장	부장	직원	계
인 원	1	2	4	7

라. 위탁기간 : 3년(2024. 10. 26. ~ 2027. 10. 25.)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성과평가 실시)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결정

아. 성과평가 결과 : 적합

-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참고

자. 향후일정

- 2024. 9. : 임시회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4. 9. :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결정 통보
- 2024. 9. :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위탁기간 (2021. 10. 26. ~ 2024. 10. 25.)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위탁 내용은 옥외광고물의 신규·연장 허가 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과 가로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입니다.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는 1994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0년 기간중에는 총 3회, 2015년, 2018년, 2021년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번 위탁기간 만료 도래(2024. 10. 25.)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5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협회는 오랜 기간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하면서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 업무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시 구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내역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구 분	위탁업체명	위탁기간	비 고
중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동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서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남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북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7. 1. ~ 2024. 6.30.	
수 성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달 서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4. 1. ~ 2024. 3.31.	
달 성 군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10.26. ~ 2024.10.25.	
군 위 군	(사)경북옥외광고협회	2023. 5. 1. ~ 2026. 4.30.	

※ 달성군은 2015년, 2018년, 2021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을 공고,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1개 업체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일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위한 민간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54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위탁대상	위탁기간(최초위탁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992. 11 ~ 현재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년 1회)
(대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 종사자 45개 업소)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사무처장	부장	직원	계
인 원	1	2	4	7

라. 위탁기간 : 3년(2024. 10. 26. ~ 2027. 10. 25.)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3.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성과평가 실시)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결정

아. 성과평가 결과 : 적합

-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참고

자. 향후일정

- 2024. 9. : 임시회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4. 9. :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결정 통보
- 2024. 9. :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2021. 10. 26. ~ 2024. 10. 25.)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와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위탁 내용은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 종사자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년 1회)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는 1992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0년 기간중에는 총 3회, 2015년, 2018년, 2021년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번 위탁기간 만료 도래(2024. 10. 25.)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3.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오랜 기간 종사자 교육을 수탁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 업무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시 구군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위탁 내역

○ 옥외광고물 종사자, 안전점검 위탁자 교육

구 분	위탁업체명	위탁기간	비 고
중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8.25. ~ 2024. 8.24.	
동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11. 1. ~ 2024. 3.31	
서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8. 1. ~ 2024. 7.31.	
남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9.17. ~ 2024. 3.31.	
북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12.1. ~ 2024. 11.30.	
수 성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 9. 5. ~ 2024. 9. 4.	
달 서 구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2. 1. 1. ~ 2024. 12.31.	
달 성 군	(사)대구옥외광고협회	2021.10.26. ~ 2024.10.25.	
군 위 군	(사)경북옥외광고협회	2023. 5. 1. ~ 2026. 4.30.	

※ 달성군은 2015년, 2018년, 2021년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을 공고,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1개 업체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일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위한 민간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555호
- 제 출 일: 2024년 8월 2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기간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수	예산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166.25㎡	22명	1,054백만 원

나. 위탁대상 사무 범위 및 내용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등

다. 조직 및 구성

- 종사자 : 22명

(센터장1명, 부센터장1명, 상임팀장1명, 팀장2명, 팀원17명)

라.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7. :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 2024.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위탁 적정 심의

사. 민간위탁 적정 검토결과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위탁 적정 의결

아. 성과평가 결과 : 96.7점 / 탁월(부서 자체평가)

자. 향후일정

- 군의회 동의 및 의결 : 2024. 9.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4. 9.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4. 10.
- 수탁기관 선정 공보 게재 : 2024. 11.
- 협약 체결 : 2024. 1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2021. 10. 26. ~ 2024. 10. 25.)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먼저, 달성군 옥포읍 소재의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는 166.25㎡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22명, 운영예산은 10억5천4백만 원입니다.
- 주요업무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등입니다.
- 2024년 7월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2024년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위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 군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 시 정신건강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개입과 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관련 전문인력의 충원은 필수적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능력, 관련업무의 수행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